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문화체육관광부와 시·도 내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지역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전담기관 등의 지정취소 근거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역문화진흥법」(법률 제17719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이 개정됨.

이에 따라, 지역문화정보시스템 업무의 범위, 전담기관 지정 기간과 절차, 전담기관 등을 지정 취소할 경우 세부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고시로 규정된 생활문화센터의 정의를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우선 지원의 내용을 구체화함. 지역문화의 양성평등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문화재단 등의 사업 범위에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문화생태계 조성을 포함하며,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자문사업단의 지정 기간을 3년 이내로 변경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생활문화센터”를 포함함 (안 제2조제4호 신설)
나. 법으로 상향된 기존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문을

- 삭제하고, 구성과 운영에 관해 남은 조항을 제5조의2로 이동하여 규정함 (안 제5조의2 신설, 안 제22조 삭제)
- 다.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해 문화향유 사업 시행시 우선권 부여와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6조제3항 신설)
- 라.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과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의 지정기간을 2년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함(안 제7조제4항, 안 제8조제3항)
- 마. 지역문화실태조사의 조사 범위를 구체화하고,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하는 등 절차적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의2 신설)
- 바. 지역문화정보시스템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구체화하며, 그 밖에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로 정하도록 함 (안 제8조의2 신설)
- 사. 전담기관 지정 대상, 지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지정 기간(5년 이내), 지정 절차 등을 정함 (안 제8조의3 신설)
- 아.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자문사업단, 전담기관을 지정한 후 취소시 세부기준과 절차를 정함 (안 제8조의4 신설, 별표 1 신설)
- 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 범위에 “지역 내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문화생태계의 조성”을 포함함 (안 제21조제1항제6호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예정

2) 행정규제 관련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생활문화센터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협력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력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력위원회에 분과위원회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선정된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해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는 사업 시행에 있어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제4항의 “2년으”를 “3년 이내”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지역문화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 관련 제도, 예산 등 지역문화 정책 현황
2. 지역의 문화시설, 생활문화시설 등 현황

3. 지역문화전문인력,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 등 현황

4. 지역 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문화향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 현황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 정책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제3항의 “2년으”를 “3년 이내”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이하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문화 정보의 수집 및 전자적 연계
2. 지역문화 관련 통계정보의 관리
3. 지역문화 정보의 표준화 및 공동 활용

4. 실태조사 결과의 관리 및 활용

5. 그 밖에 지역문화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전담기관의 지정·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할 정도의 업무 수행실적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지역문화진흥 관련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3.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확보하고 있을 것

4. 법 제13조의3제2항제7호의 업무의 경우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할 정도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으며 정보의 수집·관리 구축 및 통계분석 등의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기관과 업무의 범위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13조의3제2항 제10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에 따른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2.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문화센터의 활성화 지원

3.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5항 관련 업무

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4(지정 취소) ① 법 제13조의4에 따른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의4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역 내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문화생태계의 조성

7.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4조의 “별표”를 “별표2”로 하고, “별표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제8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차수 적용은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행정처분기준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2회 위반한 것으로 본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지정취소 처분을 경고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3조의4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3조의4제1항제2호	경고	지정취소
다. 그밖에 공약을 해치는 행위	법 제13조의4제1항제3호	경고	지정취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당시 종전의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이하 “종전의 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간이 만료하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간이 만료한 이후에 이 영에 따른 최초의 지정에 대하여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3항에서 정하는 지정기간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2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생활문화센터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신설>	제5조의2(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에는 성별

	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u>협력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u>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u>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④ <u>협력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력위원회에 분과 위원회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u> ⑤ <u>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위원회, 분과</u>
--	--

	<u>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u>
제6조(문화환경 취약지역의 선정 및 지원) ① ~ ② (생략) <신 설>	제6조(문화환경 취약지역의 선정 및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선정된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해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는 사업 시행에 있어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u>
제7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 ③ (생략) ④ <u>양성기관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u> ⑤ ~ ⑥ (생략)	제7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양성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u> ⑤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지역문화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u>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1. <u>지역문화 관련 제도, 예산 등 지역문화 정책 현황</u>
2. <u>지역의 문화시설, 생활문화시 설 등 현황</u>
3. <u>지역문화전문인력, 지역의 문 화예술 단체 등 현황</u>
4. <u>지역 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문화향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 현황</u>
5. <u>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 지역문화 정책수립에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u>
②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 사를 할 때 조사대상자 선정기 준을 정하고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 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u>
③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 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 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u>
④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 조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 청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u>

	⑤ <u>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서 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한다.</u>
제8조(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지정 등) ① ~ ② (생략) ③ <u>자문사업단의 지정기간은 2년 으로 한다.</u>	제8조(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지정 등) ① ~ ② (현행과 같 음) ③ <u>자문사업단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u>
<신 설>	제8조의2(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u>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 른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이하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이라 한 다)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수행할 수 있다.</u> 1. <u>지역문화 정보의 수집 및 전자 적 연계</u> 2. <u>지역문화 관련 통계정보의 관 리</u> 3. <u>지역문화 정보의 표준화 및 공 동 활용</u> 4. <u>실태조사 결과의 관리 및 활용</u> 5. <u>그 밖에 지역문화 정보의 효율 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u>

<신 설>	<u>고 인정하는 업무</u>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u>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제8조의3(전담기관의 지정·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			<u>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u> 1. 지역문화진흥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할 정도의 업무 수행실적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지역문화진흥 관련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3.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확보하고 있을 것 4. 법 제13조의3제2항제7호의 업무의 경우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할 정도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으며 정보의 수집·관리 구축 및 통계분석 등의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기관과 업무의 범위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13조의3제2항 제10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
--------------------	---	--	--	---

<u><신 설></u>	<u>는 데 필요한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법 제9조에 따른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2.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문화 센터의 활성화 지원 3.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5항 관련 업무 제8조의4(지정 취소) ① 법 제13조의4에 따른 지정취소의 세부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의4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 예술위원회의 설립·운영) ① (생 략) ② (생 략) 1.~5. (생 략)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
	제21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 예술위원회의 설립·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6. 지역 내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문화생태계의 조성 7.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u><삭 제></u>

치 및 운영) ① ~ ⑩ <생 략>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u>별표와 같다.</u>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u>별표2와 같다.</u>
<u><신 설></u>	별표 1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제8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차수는 <u>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차수 적용은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u> 다. 행정처분기준이 경고인 경우에는 <u>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2회 위반한 것으로 본다.</u>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가 고의

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지정취소 처분을 경고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 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3조 제4제1항 제1호	지정취소	
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3조 제4제1항 제2호	경고	지정취소
다. 그밖에 공익을 해치는 행위	법 제13조 제4제1항 제3호	경고	지정취소

별표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2631